

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1. 심시 경과

- . 2007. 8. 21 : 탁석주 의원외 3인 발의
- . 2007. 8. 21 : 의회운영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007-53호)
- . 2007. 9. 4 : 제115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.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.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- . 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간사) ①위원회에 <u>간사</u> 1인을 둔다. ② <u>간사</u> 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간사</u> 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	제11조(부위원장) ①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. ② <u>부위원장은</u>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부위원장</u>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다. 관계법령

■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경호)

■ 동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■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,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※직명변경 : 전국 시.도(16→9), 경남 시.군(20→4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